

# 변경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AI632 )							
종류(클래스)	A	A-e	C1	C2	C3	C4	C-e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I633	AI634	AI635	AI636	AI637	AI638	AI639	AI640

- 주요 변경 내용 :

- 책임운용인력 변경 및 부책임운용인력 말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책임운용인력	서재형	김명식	2014.07.11
부책임운용인력	김명식	-	2014.07.11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변경
-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 반영
-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변경 대비표'참조)

- 변경 대상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변경시행일: 2014.07.11

# [투자설명서]

## 가.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3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 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3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 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실적 가.연평균 수익률 나.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3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 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현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 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5부.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 요한 사항 4.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나. 기타변경내용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u>반드시</u>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4. <u>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p> <p>9. &lt;신설&gt;</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u>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p> <p>4. <u>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p>9. <u>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 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p>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p>- 책임운용인력 : 서재형</p>	<p>- 책임운용인력 : 김명식</p>
	<p>- 부책임운용인력 : 김명식</p>	<p>- 부책임운용인력 : 말소</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표이사 및 주식운용2본부가 공동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p>	<p>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u>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u>	<삭제>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생략 (4) <신설>	(1)~(3) 좌동 (4) <정정후 1)>
첨 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삭제>

#### 정정 후 1)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가.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운용전문인력 (2014.07.11. 기준)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6.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III . 요약 재무정보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나. 기타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 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9. &lt;신설&gt;</p>	<p>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 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p>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책임운용인력 : 서재형	- 책임운용인력 : 김명식
	- 부책임운용인력 : 김명식	- 부책임운용인력 : 말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표이사 및 주식운용2본부가 공동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1. 보수 및 수수료	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삭제>
2. 과세	가. 생략 나. <신설>	가. 생략 나. <정정후 1)>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기 존>	<삭제>

정정 후 1)

- 미국 해외계좌의무납세법(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제약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

- 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펀드의 지분은 어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에게도 청약이 권유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판매되어서도 안됩니다. 펀드가입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미국 납세자를 대신하여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펀드의 지분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펀드 지분을 강제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